

청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710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배종근

피고B

변론 종결 2022. 4. 8.

판결 선고 2022. 4. 22.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19. 1. 9. 접수 제33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8. 10. 10. C에게 31,000,000원을 이자 연18.9%, 지연손해금율 연 21.9%로 대출하였다.

○ C은 피고에게 2019. 1. 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9. 1. 9.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2005. 10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집안의 사유로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2005. 10. 19.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아들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 10,000,000원도 안되는 구옥이고, 위와 같이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는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의 위 주장이 다소 애매한데,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선택하고 살핀다).

나. 사해행위 불해당 주장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아들인 C에게 2005. 10. 19. 이를 증여하고 2005. 11. 10.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보태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의 경위(피고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였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위해 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더라도, C의 이 사건 증여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 상황을 심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사정, 즉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현룡

별지